

정 관

2019. 12. 27

학교법인연성학원

학 교 법 인 연 성 학 원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교양교육과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하고, 지역의 사회복지와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8.1.3, 2010.4.29)

제 2 조 (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연성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 3 조 (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설치·경영한다.

1. 안양전문대학 (교명은 “연성대학교”이라 한다)(개정1998.6.1, 2012.5.1)
2. 연성대학교 부속유치원(개정2012.5.1)

제 4 조 (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37번길 34에 둔다.(개정2009.2.10, 2012.3.7)

제 5 조 (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정수의 2/3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에 보고 한다.(개정2008.1.3, 2010.3.15, 2012.8.28)

제 2 장 자산과 회계

제 1 절 자 산

제 6 조 (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개정2008.1.3)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7 조 (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2008.1.3)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8 조 (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 절 회 계

제 9 조 (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 9 조의 2 (예·결산의 공개)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예산·결산은 당해 학교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되, 예산은 매회년도 개시 5일 이전까지,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 10 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11 조 (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황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 재산으로 한다.

제 12 조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12 조의 2 (예·결산보고 및 공시)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신설 2006.10.4, 개정 2008.1.3)

② 제1항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06.10.4, 개정 2008.1.3)

제 3 절 삭제 (2006.10.4)

제 13 조 삭제 (2006.10.4)

제 14 조 삭제 (2006.10.4)

제 15 조 삭제 (2006.10.4)

제 16 조 삭제 (2006.10.4)

제 17 조 삭제 (2006.10.4)

제 3 장 기 관

제 1 절 임 원

제 18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8인 (이사장 1인 및 개방이사를 포함한다)(개정2008.1.3)
2. 감사 2인 (추천감사 1인을 포함한다)(개정2008.1.3)

제 19 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 4년
2. 감사 : 2년(다만,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개정2008.1.3)

② 삭제(2008.1.3)

제 19 조의 2 (상근임원) ① 제18조의 임원 중 다음의 상근하는 임원을 둘 수 있다.

1. 이사장
2. 상임이사 1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근하는 임원의 보수는 보수규정 및 관련지침으로 정한다.(전문개정2019.6.28)

제 20 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이사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개정2008.1.3)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이사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 할 수 있다.(개정2006.10.4)

1. 사립학교법 및 이 정관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관할청의 해임 요구가 있을 때(개정2006.10.4)
3.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에 의한 이 법인의 비공개 대상 정보를 공개한 때(신설2006.10.4, 개정2008.1.3)
4. 대학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이를 방조한 때(신설2006.10.4, 개정2008.1.3)
5. 당해법인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거나 방조한 때(신설2006.10.4)
6. 이 법인의 설립이념 및 교육목적을 변경 또는 중요 추진 사업을 반대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생을 지도·선동하거나 이를 방조한 때(신설2008.1.3)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삭제(2006.10.4)

제 20 조의 2 (개방이사의 자격) 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제1조의 법인 설립목적과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서 전문직업교육을 이해하는 자이어야 하며, 설립정신에 부합한 학교를 유지·경영할 수 있도록 법인 이사회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신설2006.10.4, 개정2007.2.2)

제 20 조의 3 (개방이사의 정수) 이 법인의 개방이사의 수는 2명으로 한다.(개정

2006.10.4)

제 20 조의 4 (개방이사 등의 추천 및 선임 방법) ① 이 법인은 개방이사 또는 사립학교법 제21조제5항 규정에 의한 감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재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각각 대상자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한다.(개정2008.1.3)

② 제1항에 의하여 법인으로부터 추천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개방이사는 대상인원의 2배수를, 감사는 단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내에 개방이사의 추천이 없을 경우 이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 할 수 있다.(개정 2008.1.3)

③ 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개정2008.1.3)

④ 삭제(2008.1.3)

제 20 조의 5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추천위원회는 연성대학교 대학평의원회에 둔다.(개정2012.5.1)

② 추천위원회의 위원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2인(개정2012.3.7)

2.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③ 제2항제2호의 추천위원은 이 법인 및 대학의 건학 이념 구현에 적합한 인사이여야 한다.

④ 추천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 한다.

⑤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조신설2008.1.3)

제 21 조 (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정수의 반수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개정2008.1.3)

② 이사회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2006.10.4)

③ 이사정수의 3분의 1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를 선임한다.(개정2008.1.3)

⑥ 제5항 감사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0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2006.10.4)

⑦ 이 법인의 건학 이념 및 교육목표에 동의하지 않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2008.1.3)

⑧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신설2006.10.4, 개정2008.1.3)

1.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자(개정2008.1.3)

2. 사립학교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자(개정2008.1.3)

3. 사립학교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따라 대학의 장의 직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자(개정2008.1.3)

제 22 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삭제

제 23 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삭제

제 24 조 (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결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25 조 삭제(2006.10.4)

제 26 조 (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신설2006.10.4, 개정2008.1.3)

②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개정2006.10.4)

③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개정2006.10.4)

제 2 절 이 사 회

제 27 조 (이사회 구성 및 기능 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대학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개정2008.1.3)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28 조 (이사회회의 개최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한다.(개정2016.2.5)

② 이사회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2016.2.5)

제 29 조 (이사회회의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대학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개정2008.1.3)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 30 조 (이사회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 30 조의 2 (이사회회의록 공개) ① 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이사회에서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신설2006.10.4, 개정2008.1.3)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 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신설2008.1.3)

제 31 조 (이사회소집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개정2007.2.2)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결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2006.10.4)

제 3 절 대학평의원회(개정2007.2.2)

제 31 조의 2 (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대학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2007.2.2)

제 31 조의 3 (평의원회의 구성 및 자격) ① 대학평의원회는 교원·직원·조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대학의 장이 위촉하는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2008.1.3, 2018.3.30)

1. 교원 4명(개정2018.3.30)
2. 직원 3명(개정2018.3.30)
3. 조교 1명(신설2018.3.30)
4. 학생 2명(개정2018.3.30)
5.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1명(개정2008.1.3)

② 평의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2007.2.2)

제 31 조의 4 (평의원회 의장 등) 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개정2007.2.2)

② 대학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을 각각 1명을 두며, 평의원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학생이 아닌 평의원 중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개정2007.2.2, 2018.3.30)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개정2007.2.2)

제 31 조의 5 (평의원의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학생인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2007.2.2, 2018.3.30)

제 31 조의 6 (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5호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개정2008.1.3)

1.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개정2008.1.3)
3. 대학현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개정2008.1.3)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2008.1.3)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개정2008.1.3)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개정2008.1.3)
7. 기타 대학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2008.1.3)

제 31 조의 7 (소집)

- ① 평의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1~2월, 7~8월)로 의장이 소집한다.
- ② 평의원회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와 회의의 안건을 정하여 대학의 장 또는 재직 평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한다.(조신설 2008.1.3)

제 31 조의 8 (운영규정) 평의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조개정2008.1.3)

제 4 절 사학윤리위원회

제 31 조의 9 (사학윤리강령 준수) ① 이 법인은 법인 및 경영하는 학교운영에 있어 “사학윤리강령(별표 1)”을 준수한다.

- ② 이 법인 및 경영하는 학교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사학윤리위원회 활동에 협조하고 그 결정사항을 준수한다.(조개정2008.1.3)

제 4 장 수 익 사 업

제 32 조 (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부동산 임대업
2. 영리법인에 대한 투자(주식)
3. 기타 수입증대를 위한 각종 사업

제 33 조 (수익사업의 명칭) 제32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학교법인 연성학원 사업소를 경영한다.

제 34 조 (수익사업체의 주소) 제33조의 사업소의 주소는 아래와 같다.

1.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143번길 15(개정2012.5.1)
2.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253(개정2012.5.1)

제 35 조 (관리인) ① 제32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 복무,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 5 장 해 산

제 36 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2010.3.15)

제 37 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개정2010.3.15)

제 38 조 (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개정2010.3.15)

제 6 장 교 직 원

제 1 절 교 원

제 1 관 임 면(개정2008.1.3)

제 39 조 (임면) ①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대학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또한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대학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배우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개정2009.1.23)

② 대학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신설2006.10.4,개정2008.1.3)

③ 대학의 장 이외의 대학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신규임용 및 징계 이외의 임면권은 대학의 장에게 위임하고 대학의 장은 위임된 임면권 행사시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강사 및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의 비전임교원의 임용, 신분 등의 제반 사항은 대학의 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2008.1.3, 2019.4.29, 2019.6.28,2019.12.27)

④ 대학 교육기관의 부총장 등의 행정직 보직은 대학의 장이 보한다. 이 경우 대

학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2.10,2019.12.27)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10.4)

⑥ 조교는 그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며, 당해 대학의 장이 임면한다.(개정 2008.1.3)

⑦ 제1항 내지 제3항 이외의 유치원 교원은 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신설2008.1.3)

⑧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 당해 대학의 장으로 임용된 자가 제2항의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대학의 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에 대학의 장 임용 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신설2017.2.27)

제 39 조의 2 (교원의 계약제 임용 등) ① 정관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임용은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

1. 근무기간

가. 교 수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규정하는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교수로 최초 임용되는 경우(해당 대학의 부교수가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9.2.10)

나. 부교수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규정하는 정년까지의 기간 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개정 2007.7.27)

다. 조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개정 2013.1.1)

라. 강사, 비전임교원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신설 2019.6.28)

2. 급여 : 정관 제45조의 정한 바에 의한다.(개정 2008.1.3)

3. 근무조건 : 교수시간 및 소속 학과 등에 관한 근무조건은 대학의 학칙과 대학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8.1.3)

4. 업적 및 성과 : 교육성과, 연구실적, 학생지도 및 취업(봉사실적) 등에 관한 성과의 약정은 대학의 학칙과 인사규정, 업적평가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8.1.3)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대학의 교원인사규정과 업적평가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8.1.3)

6. 그 밖에 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07.9.10)

② 삭제

③ 대학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조

건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2007.9.10)

제 39 조의 3 (신규채용 등) ① 교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특정 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채용된 교원이 당해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사학위 전공분야가 동 대학에서 채용되어 교육·연구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그를 동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1년을 단위로 적용하되, 연간 모집인원이 3인 미만인 경우에는 누적 모집인원이 3인 이상 되는 연도의 말까지를 통산하여 적용한다.

③ 전문대학 교원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 대학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각 심사단계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개정2007.9.10)

1. 기초심사 :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등의 심사
2. 전공심사 : 기초심사를 통과한 채용 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 등의 심사
3. 면접심사 : 전공심사를 통과한 채용 후보자에 대한 인성 등의 심사

④ 제3항의 채용심사를 위한 심사 위원은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당해 대학 소속의 교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전문가중에서 대학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및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을 심사하는 때에는 심사위원 중 3분의1 이상은 본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대학의 교원이 아닌 자로 한다.(개정2008.1.3)

⑤ 대학의 장은 전문대학 교원을 신규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지원 마감일 15일 이상으로 학칙에서 정하는 기간전까지 채용분야·채용인원·지원자격·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개정2009.2.10)

⑥ 교원의 신규채용에 지원한 자가 신규채용에 관한 심사기준 및 지원자별 심사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 채용되는 자가 확정된 후에 이를 공개한다. 이 경우 공개되는 내용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⑦ 공개전형으로 채용하는 교원임용에 있어서는 당해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로 제한 할 수 있다.

제 39 조의 4 (중전 규정에 의하여 기간제로 임용되어 2002年 3月 1日 현재 재직 중인 교원의 임용) ① 2002년 3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대학 교원은 근무기간이 종료되어(중전의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제로 임용된 경우의 임용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시 임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

용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정관 제39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1. 교 수 : 정년보장
2. 부 교 수 : 6년
3. 조 교 수 : 4년
4. 삭제(2013.1.1)

② 대학의 장은 근무기간이 종료되는 대학교원의 신청에 따라 다시 임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심사한다.(개정2007.9.1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관한 기준과 세부적인 절차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대학의 장은 대학교원을 대상으로 교육, 연구 등에 관한 업적을 평가한다.

⑦ 대학의 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업적 평가 결과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2007.9.10)

⑧ 대학의 장은 업적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 39 조의 5 (특별채용) ① 임용권자는 필요시 제39조의 3과는 별도로 특별채용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9.6.28)

② 삭제

제 39 조의 6 (정년보장교원의 심사) ① 대학에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에 앞서 정년까지 임용할 교수를 심사하기 위하여 대학 내에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대학이 정하는 정년보장교원 심사기준에 따라 해당 교원의 연구실적 등을 심사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학의 장이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 39 조의 7 (겸임교원 등) 대학의 장은 정관 제39조의 2 및 제39조의 4의 교원 외에 겸임교원, 초빙교원, 고등교육법제14조의2에 의한 강사 등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하여 교육 및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개정2008.1.3, 2014.3.1, 2019.8.1)

제 39 조의 8 (교원인사규정) 교원의 임면에 관하여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정관이 위임한 사항 및 정관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학의 장이 교원인사규정으로 정한다.(개정2008.1.3)

제 40 조 (휴직의 사유) ①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지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 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개정2007.9.10, 2017.1.1, 2017.2.27)
8. 관할청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개정 2010.3.15)
9.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신설2013.2.8)

② 임면권자는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되며, 동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신설2007.9.10)

제 41 조 (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4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2. 제40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4. 제40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5. 제40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0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은 재직 중 2회에 한하되, 그 기간은 각각 3년 이내로 한다.(개정2007.9.10)
7. 제40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8. 제40조 제9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또는 해외유학, 해외연수 기간의 범위내로 제한한다.(신설2013.2.8)

제 42 조 (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

여야 하며, 임면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40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 43 조 (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40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② 제40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8호 및 제9호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2013.2.8)

제 44 조 (직위해제 및 해임) 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임면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 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⑤ 임면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 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면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⑧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선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제 45 조 (보수) 교원의 보수는 보수규정 및 관련 지침으로 정한다.(개정2008.1.3, 2019.4.29)

제 46 조 (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

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2008.1.3)

제 46 조의 2 (명예퇴직 등) ①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2019.6.28)

제 46 조의 3 (정년) ① 교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다만, 대학의 장의 정년은 예외로 한다.(개정2019.6.28)

② 강사 및 비전임교원의 정년은 따로 정한다.(신설2019.6.28)

제 46 조의 4 (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었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 3 관 교원인사위원회

제 47 조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대학 교원(대학의 장은 제외한다)의 임면 등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대학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2008.1.3)

제 48 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의 장이 교원을 임면 또는 임면제청을 하고자 할 때 임면 또는 임면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개정2008.1.3, 2019.6.28)

2. 삭제

3. 정관 제39조의4 제3항 및 제8항 규정에 관한 사항(개정2008.1.3)

4. 기타 대학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2008.1.3)

5. 교원의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신설2013.1.1)

② 인사위원회가 제1항의 임명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정관 제3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은 정관 제39조의 2의 제1항 제4호를 참작하고, 정관 제3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은 정관 제39조의4의 제6항 및 다음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2008.1.3)

1. 국가와 학교발전 기여도 및 참여도

제 49 조 (인사위원회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대학의 장이 임명하는 5인의 전임교원으로

조직한다.(개정 2009.2.10, 2010.3.15, 2012.8.28, 2019.6.28)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 50 조 (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학의 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9.2.10, 2010.3.15., 2012.8.28, 2019.6.28)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9.6.28.)

제 51 조 (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대학의 장이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개정 2008.1.3)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2 조 (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2.10)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한다.

제 53 조 (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대학의 장이 임명한다.(개정 2008.1.3)

제 54 조 (운영규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개정 2008.1.3)

제 2 절 교원징계위원회

제 55 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7.1.1)

1.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③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신설2017.1.1)
 1.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 및 제55조의2에서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할 것
 2. 외부위원은 학교법인 또는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3.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④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권한 및 심의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신설2017.1.1)

제 55 조의 2(외부위원의 임기 등)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2017.1.1)

- ② 학교법인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2017.1.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1조의3에 따른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 56 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7 조 (징계의결의 기한) ①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신설2017.1.1)
- ③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2017.1.1)

제 58 조 (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 58 조의 2 (위원의 기피 등)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 58 조의 3 (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 59 조 (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 60 조 (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면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 임면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면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처분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④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 61 조 (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 61 조의 2 (징계사유의 시효) ① 교원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

구할 수 있다.(개정2017.1.1)

1.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3.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② 제5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신설2017.1.1)
- ③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2017.1.1)

제 61 조의 3 (비밀누설의 금지)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신설2017.1.1)

제 62 조 (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그 임면권자가 임명한다.

제 63 조 (운영규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2008.1.3)

제 3 절 삭 제

제 64 조 -- 제 77 조 삭제

제 4 절 직 원(개정2008.1.3)

제 78 조 (자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 (기능직을 포함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개정2008.1.3)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자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개정2008.1.3)

③ 재직 중인 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개정 2008.1.3)

제 79 조 (임용) ① 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2008.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개정2008.1.3)

③ 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다만, 대학소속 직원은 당해 대학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개정2008.1.3, 2019.4.29, 2019.6.28)

제 80 조 (복무)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2008.1.3)

제 81 조 (보수) 직원의 보수는 보수규정 및 관련 지침으로 정한다.(개정2008.1.3, 2019.4.29)

제 82 조 (신분보장) 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개정2008.1.3)

제 83 조 (정년) 직원의 정년은 따로 정한다.(개정2009.2.10)

제 83 조의 2 (명예퇴직 등) 직원의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2008.1.3.,2019.12.27)

제 84 조 (징계 및 재심청구) ① 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직원징계위원회는 학교에 두고 재심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개정2008.1.3)

② 삭제

제 7 장 직 제

제 1 절 법 인

제 85 조 (법인사무조직) 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법인사무처를 두며, 사

무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거나 참사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을 가진 자로 보한다.(개정2013.1.1, 2013.2.8, 2017.2.27)

② 제1항에 의한 조직 및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2 절 대 학

제 86 조 (총장 등) ① 대학에 총장을 둔다.(개정2009.2.10)

②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을 대표한다.(개정2009.2.10)

③ 대학에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개정2009.2.10)

④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2009.2.10)

제 87 조 (행정조직) ① 대학에 행정조직으로 사무국, 기획처, 교무처, 산학협력처, 입학홍보처, 학생취업처, 행정지원처를 둔다.(개정2008.1.3, 2010.2.8, 2016.2.5, 2017.1.1)

② 행정조직의 부서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다만, 행정지원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사무직원으로 한다.(개정2007.2.2, 2017.1.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④ 행정조직의 하부조직은 대학의 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한시 조직을 둘 수 있다.

제 88 조 (부속시설) ① 대학에 부속기관, 부속교육·연구기관 및 시설을 둘 수 있다.

② 각 기관에는 각각의 장을 두며, 각각의 장에는 전임교원 또는 동 분야의 전문가로 보한다.

③ 각 기관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개정2009.2.10)

④ 각 기관에는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그 분장업무는 따로 정한다.

제 89 조 삭제(2002. 3. 1)

제 3 절 유 치 원

제 90 조 (원장) ① 유치원에 원장과 원감 각 1인을 둔다.

② 원장은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원아를 보육한다.

③ 원감은 원장의 명을 받아 원무를 정리하며 원아를 보육하고 원장 유고시에는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4 절 정 원

제 91 조 (정원) 법인 및 대학, 유치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2 및 별표3, 별표4와 같다.

제 8 장 보 칙

제 92 조 (공고)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한다.(개정 2008.1.3)

제 93 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 94 조 (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임 원 명 단

직 위	성 명	생 년 월 일	임 기	비 고
이 사 장	이 주 옥	13. 1. 18	4 년	
이 사	권 상 철	14. 2. 16	4 년	
"	김 세 위	06. 11. 11	4 년	
"	홍 의 식	25. 8. 2	4 년	
"	김 정 량	12. 3. 3	4 년	
"	박 부 근	35. 12. 19	4 년	
"	윤 양 모	13. 9. 17	4 년	
감 사	오 상 협	35. 8. 3	2 년	
"	이 기 순	25. 2. 10	2 년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7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77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정관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직원으로 임용된 자 중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정관 시행이후 6월 이내에 당연 퇴직된다.(결격사유 해당자)
- ③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사무조직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직원이 퇴직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사무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 ④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2의 각 직급에 임용된 자는 이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79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79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1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은 시행당시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학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당해 학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학의 교원(학장은 제외한다.)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③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④ (대학의 보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부학장 등의 보직은 이 정관에 의하여 당해 학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 ⑤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인사위원 위원 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 ⑥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에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3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 중인 이사는 그 임기 만료시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9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9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하되 교명변경에 관한 사항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0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1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 ③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④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전문대학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1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1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3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3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명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한 안양전문대학교명은 교육부 인가일 전일까지 사용하고, 안양과학대학 교명은 교육부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 ③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안양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안양과학대학에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대학교육기관에 교수로 임용된 교원은 정관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현재 재직중인 교수로서 그 임용잔여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잔여기간 만료시 제39조 제2항, 제39조의 3의 규정에 의거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전에 임용·승진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해 임용·승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전에 임용·승진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해 임용·승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 ② (사업장주소의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전의 사업장은 이 정관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 ③ (관리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관리인은 이 정관에 의해 임용된 것으로 본다.
- ④ (대학의 보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전에 임명된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의 보직은 이 정관에 의하여 임명한 것으로 본다.

부 칙

- ① (施行日) 이 정관의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9조의4 제5항 내지 제8항의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② (採用審査委員에 관한 적용례) 정관 제39조의3 제4항의 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대학교원의 채용심사부터 적용한다.
- ③ (채용공고에 관한 적용례) 정관 제39조의3제5항의 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공고되는 신규채용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 (施行日) 이 정관의 규정은 2003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施行日) 이 정관의 규정은 2005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겸임교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겸임교원 등은 이 정관에 의해 임용된 것으로 본다.
- ③ (제39조의 8 교원인사규정에 의한 임용된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전에 제39조의8 교원인사규정에 의해 임용되어 근무하는 교원은 이 정관에 의해 임용된 것으로 본다.
- ④ (법인사무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법인사무직원은 이 정관에 의해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 ① (施行日) 이 정관의 규정은 2005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施行日) 이 정관의 규정은 2005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정관의 시행 당시 기선임된 감사의 임기는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유지한다.

부 칙

- ① (施行日) 이 정관의 규정은 2006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施行日) 이 정관은 2006년 10월 4일부터 적용한다.
- ② (학교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개정 정관 시행당시 재임 중인 학교장에 대해서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학교장의 임기종료일까지는 종전규정에 의한다.

부 칙

- ① (施行日) 이 정관은 2007년 2월 2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 (施行日) 이 정관은 2007년 4월 27일부터 적용한다.
- ② 이 정관 시행 전에 임용한 교원은 이 정관에 의해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 ① (施行日) 이 정관은 2007년 9월 10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 (施行日) 이 정관은 2008년 1월 3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 (施行日) 이 정관은 2009년 1월 23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 (施行日) 이 정관은 2009년 2월 10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 (施行日) 이 정관은 2010년 2월 8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 (施行日) 이 정관은 2010년 3월 15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 (施行日) 이 정관은 2010년 4월 29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 (施行日) 이 정관은 201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 (施行日) 이 정관은 201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 (施行日) 이 정관은 2012년 3월 7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②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안양과학대학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연성대학교에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8월 28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2월 8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2월 5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2월 27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3월 30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4월 29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9조의7(겸임교원 등)의 강사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신규임용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② (시간강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전에 위촉되어 근무하는 시간강사는 이 정관에 의해 강사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6월 28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12월 27일부터 적용한다.

私學倫理綱領

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 私學은 나라와 겨레의 發展을 선도해 왔다
이처럼 빛나는 傳統을 이어 받은 우리 私學은 지금, 새 세기의 文明史的 變化에 能動的으로 對處하며 自由民主主義를 守護하고 知職基盤 社會를 선도할 創意的이고 道德的으로 成熟된 人材를 養成할 責務를 賦與받고 있다.

이에 우리 私學經營者 일동은 教育立國의 使命感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私學의 公共性和 自律性を 더욱 드높이고자, 뜻을 모아 私學倫理綱領을 採擇한다.
우리는 良心과 矜持를 가지고 이 綱領을 遵守하며, 이에 違背되는 경우에는 勤勉과 制裁로 이를 自律的으로 是正해 나아갈 것을 다짐한다.

○ 建學情神

우리는 建學의 뿌리가 崇高한 建學情神에 있음을 銘心하며, 오로지 그 높은 뜻을 繼承하고 實現하는 일에 獻身한다.

○ 公共性

우리는 私學綱領에 있어서 學園內外的 個人이나 集團의 사사로운 利害關係를 초월하여 公共性的 原則을 尊重함으로써 教育福祉理念을 具現하는데 最善을 다한다.

○ 自主性

우리는 教育의 自主性和 專門性, 政治的 中立性を 保障한 憲法精神에 立脚하여 私學의 本質을 侵害하는 어떠한 規制나 干涉도 斷乎하게 排擊하며, 自衿的으로 教育 方針을 實踐하여 私學의 特殊性을 昂揚한다.

○ 綱領合理化

우리는 私學綱領을 合理化, 效率化하고 모든 教育資源을 公正하고 透明하게 管理·保護함으로써, 教育效果를 極大化하는 일에 우선적인 努力을 傾注한다.

○ 和合·協力

우리는 私學 構成員 모두가 自發的으로 參與하고 獻身할 수 있도록, 和合·協力하는 教育環境을 助成하며, 모든 構成員의 停當한 權益이 尊重되도록 努力한다.

【별표 2】 (개정 2013.4.1, 2014.3.1)

법 인 사 무 조 직 정 원

총	계	4명
일 반 직	계	3명
2 급 (참 여)		1명
6 급 (주 사)		1명
8 급 (서 기)		1명
기 술 직	계	1명
9 급		1명
운 전 원		1명

【별표 3】 (개정 2007.2.2, 2011.3.1, 2012.3.1, 2014.3.1, 2014.4.1, 2017.2.27)

학 교 사 무 조 직 정 원

총	계	50명
일 반 직	계	38명
기 술 직	계	12명

【별표 4】

유치원 사무조직정원

총	계	2명
기 능 직	계	2명
10 등 급	계	2명
운 전 원		1명
사무보조원		1명